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 - 24호

우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류로서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류로 교환 청구 가능한 우표류의 종류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-38호, 2008. 9. 5.)와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외의 부분이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사용하지 아니한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의 교환금액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3-24호, 2003. 6. 2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4. 5. 14.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1. 교환청구 대상 우표류

가. 미사용 우표

1) 종류 : 보통우표, 기념우표, 나만의우표(조합형)

2) 대상 : 오염, 훼손되지 아니하여 판매 가능한 것

3) 오염, 훼손되어 판매가 불가능 한 것은 교환이 불가능함

나. 미사용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

1) 종류 : 보통엽서, 기념엽서, 광고엽서, 그림엽서, 항공엽서, 봉함엽서, 왕복엽서, 항공서간, 국내용 고객맞춤형엽서(기본형), 국제용 고객맞춤형엽서(기본형)

2) 대상 : 오염, 훼손되지 아니하여 판매가 가능한 것

3) 오염, 훼손되어 판매가 불가능 한 것 중 교환 가능한 훼손엽서 및 항공서간은 교환수수료 징수 대상임

2. 국제반신권은 우표로만 교환 가능

3. 교환 수수료

가. 미사용 우표 및 미사용 엽서로 판매가 가능한 것 : 무료

나. 훼손엽서 교환 수수료

구 분	단 위	교환수수료
보통엽서	1장마다	10원
기념엽서	〃	10원
광고엽서	〃	10원
그림엽서	〃	20원
항공엽서	〃	20원
봉함엽서	〃	20원
왕복엽서	발송엽서 또는 회송엽서 각 1장마다	10원
	발송엽서 및 회송엽서를 합한 1장마다	20원
항공서간	1장마다	20원
국내용 고객맞춤형엽서(기본형)	〃	10원
국제용 고객맞춤형엽서(기본형)	〃	20원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3-24호(2003.6.21.)와 제2008-38호(2008.9.5.)는 각각 폐지한다.